

# 대학원 학칙

- 제 정: 1963년 4월 1일
- 개 정: 2023년 2월 8일
- 관리부서: 대학원 교학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은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지도자 배출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여 창의적이고 봉사하는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학문 창달을 통하여 사회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3.)

## 제2장 과정 및 정원

**제2조(과정)**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 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 이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을 둔다. (개정 2006.1.1)

**제3조(협동과정)**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대학원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 이라 한다)과 학과간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9.18./2019.4.10)

② 학·연·산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학과는 각각 <별표3>, <별표4>와 같다. 다만, 학과간 협동과정 참여학과는 관련 학과간의 협의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될 수 있다.(신설 2015.9.18./개정2019.4.10)

**제4조(학과 및 정원)** ① 대학원 각 과정에 설치하는 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의 정원 중 20%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석사와 박사과정이 모두 설치된 학과에 한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6.1.1./개정 2015.9.18.)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대상자 (개정 2019.4.10.)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 (개정 2019.4.10.)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③ 대학원 각 과정에 설치하는 신설 학과의 경우 설치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학과평가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4.)

## 제3장 입학

**제5조(입학시기)** 입학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각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개정 2019.4.10.)

-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8.5.19/ 2017.10.28.)

② 박사과정

-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개정 2021.08.31.)

나. 법령에 따라 석사학위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1.08.31.)

③ (삭제 2019.4.10.)

**제7조(편입학)** 편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입학전형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8조(취학제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박사과정 취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을 할 수 있되 그 재학기간은 휴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등 총장이 정한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07.10.1)

②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선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10.1)

③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모집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형료의 반환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전형료 반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7.10.1./ 2015.9.18.)

④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2.1.)

**제9조의2(입학취소)(조신설 2021.08.31.)** 총장은 입학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과과정, 수업, 학점

**제10조(수업연한과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②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2.8. / 2021.10.26)

③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④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⑤ 위 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재학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3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제11조(수업 및 수업일수) (조명칭변경 2017.10.28.)** ① 각 과정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항 번호 신설 2017.10.28.)

②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나눈다. (신설 2017.10.28.)

③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8.)

④ 대학원의 수업 중 학과별로 일부 교과목을 원격수업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때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9.4.10.)

**제12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각 학위 과정에 필요에 따라 학부·대학원 연계교과목 및 특수대학원·대학원 연계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교과목은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0.)

③ 각 연계교과목은 연계하는 관련 학위 과정과 공동으로 개설하며, 각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4.10.)

**제13조(학점이수)** ① 석사과정 수료학점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의 수료학점은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학점은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수료학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03./2019.4.10./2019.12.14)

②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과에서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9.4.10.)

**제14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단, 박사과정은 1회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3학점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03./2019.4.10./2022.04.22.)

② 보충과목 이수해당 학생이 보충과목을 이수하는 학기에는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항 신설 2022.04.22.)

**제15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16조(수료증 발급)** 각 학위 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료요건을 갖춘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 1>에 의한 수료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03./2019.4.10)

**제17조(학점인정)** (개정 2010.12.0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교과목 이수학점
2. 박사과정 입학 전의 석사과정에서의 초과취득학점 (개정 2019.4.10.)
3. 학술교류 협정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4. “대졸미취업자를 위한 연구과정” 이수학점
5. 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학점
6. 학·석사연계과정 이수학점
7. 석사 또는 박사과정생이 수강한 우리대학교 특수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

## 제 5 장 시험 및 성적

**제18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말에 그 학기 수업일수 중 14주를 수업한 각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1.1)

**제19조(학업평가 및 평점)**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8.5.19./개정 2015.4.10)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sup>+</sup>	97~100	4.3	B <sup>+</sup>	87~89	3.3	C <sup>+</sup>	77~79	2.3
A <sup>0</sup>	94~96	4.0	B <sup>0</sup>	84~86	3.0	C <sup>0</sup>	74~76	2
A <sup>-</sup>	90~93	3.7	B <sup>-</sup>	80~83	2.7	C <sup>-</sup>	70~73	1.7
						F	69이하	0
W							포기 (Withdraw)	

다만, 교과목 성격에 따라 학업성적의 평점을 P(합격)/F(불합격)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04.10.)

② 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C-(1.7) 이상이며 전체학기 평점평균은 B0(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성적불량으로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06.1.1)

④ 개강 후 5주 이내에 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원을 제출하는 경우 그 교과목은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0.12.03)

⑤ 보충과목 이수성적 인정은 C- 이상으로 하며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⑥ 평점평균의 산출은 총 성적 평점 누계치를 그 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⑦ 성적평가가 P/F인 과목은 수료학점에는 포함되나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되지 않는다.(신설 2015.4.10.)

## 제6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재입학

**제20조(등록)**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제10조에서 정한 수업연한까지 정규등록 하여야 한다. 단, 정규등록 학기 내에 수료학점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필요한 학기만큼 추가적으로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2021.10.26)

②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학생은 지도교수로부터 학위논문에 필요한 연구와 실험실습지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0.12.03./2019.4.10.)

③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생은 당해학년도 입학금의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④ 학·석사연계과정 이수학생이 3학기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4학기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⑤ (삭제 2019.4.10.)

⑥ (삭제 2019.4.10.)

⑦ (신설 2006.1.1./개정 2019.4.10./항이동 2019.12.14)

⑧ 입학금, 등록금 납부 및 반환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조번호변경 2006.1.1.)

**제20의2조(과정전환) (조신설 2019.12.14.)** ① 석·박사 통합과정의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생의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 신청은 여석내에서 3학기에 가능하며,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환할 수 있다.

**제21조(휴학)** ① 정규등록 학기 중 학생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 이후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을 위하여 학점등록을 하는 학생도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8.)

② 휴학기간은 각 과정마다 통산 2년으로 하되,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년으로 한다. 다만,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녀 1인당 1년까지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14.8.20./2015.9.18./2017.1.26./2019.4.10)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23조(자퇴)**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제24조(제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장의 제정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19.4.10.)

① 재학연한이내에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 (개정 2019.4.10.)

② 전체 학기 평점평균이 B0(3.0) 미만인 학생 (개정 2019.4.10.)

③ 징계에 의하여 퇴학 조치된 학생 (개정 2019.4.10.)

④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학생 (개정 2019.4.10.)

⑤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진퇴학한 학생 (개정 2019.4.10.)

**제25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학과 전체교수의 동의 및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08.5.19)

③ 재입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9.4.10.)

④ 재입학한 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이전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10.)

⑤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처음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7장 세부 전공 및 학과의 변경 (장 제목 변경 2019.4.10.)

**제26조(전공 및 학과 변경) (조명칭변경 2019.4.10.)** ① 동일학과 내에서 세부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세부전공의 변경요청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4.30./2019.4.10.)

② 국가 차원의 주요 사업 수행과 관련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다른 학과의 전공으로 학과와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07.4.30./개정 2019.4.10.)

**제27조(세부전공 및 학과변경 절차) (조명칭변경 2019.4.10.)** ① 동일학과 내에서 세부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석사과정학생은 3학기 초 20일 이내, 박사과정 학생은 2학기 초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4.30./2019.4.10.)

1. 세부전공변경원(개정 2019.4.10.)
2. 성적증명서

② 학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신설 2007.4.30)

1. 학과변경원 (개정 2010.12.03./2019.4.10)
2. 국책 사업 수행 증빙 자료
3. 영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적용방법 및 동의서 (개정 2019.4.10./2021.08.31)

### 제8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28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분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제29조(장학금)** 장학금은 장학금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개정 2012.5.19)

### 제9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연구생

**제30조(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① 대학원에 교양, 연구 및 직무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 또는 연구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연구생)** ① 석·박사과정의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원 학칙 제6조에 규정한 학력을 소지한 경우 연구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별지<서식 2>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전형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장 자격시험

**제32조(영어시험)(조이름변경 2019.12.14.)** (개정\_단서조항 추가 2008.5.19)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4.)

**제33조(종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시기)** ① 영어시험은 매 학기 1회씩 실시한다. (개정 2021.08.31.)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1.08.31.)

**제35조(재시험)** 영어시험과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8.31.)

**제36조(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영어 및 종합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08.31.)

## 제11장 학위논문

**제37조(학위논문제출자격) (조명칭변경 2019.4.10.)** (개정 2013.10.26./2015.4.10)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1. 재학연한 이내에 각 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여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2.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 (개정 2021.08.31.)
3.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 (신설 2015.2.6.)
4. 박사학위 과정은 학과내규에 규정된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동등업적 요건을 충족한 학생(신설 2015. 4. 10)

**제38조(학위논문제출) (조명칭변경 2019.4.10.)**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이 지정하는 기간에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학위논문작성언어) (조명칭변경 및 개정 2008.12.15./2019.4.10)**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 1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위 지정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 (학위논문심사 및 합격판정) (조명칭변경 2019.4.10.)**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내·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학과 교수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자격기준에 의해 위촉된 석사과정 3명, 박사과정 5명의 심사위원으로 하며 합격판정은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 제12장 학위수여

**제41조(학위수여)** (개정 2008.5.19./ 2011.12.1./ 2013.10.26/2018.2.14.)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고, 대학원위원회의 졸업 심의를 통과한 학생에게 총장은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2.14./2019.4.10.)

1. 수업연한 이상 등록
2. 각 과정 소정의 학점 이수 및 전체학기 평점평균 3.0이상
3. 자격시험(영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개정 2018.2.14./2021.08.31)
4. 학위논문심사 합격 및 학위논문 제출 (개정 2018.2.14.)

② 전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해당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42조(학위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으며 석·박사통합과정자 중 석사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1)

**제43조(학위기)** 석사·박사의 학위기는 별지<서식 3>, <서식 4>, <서식 6>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8.2.14.)

**제44조(학위논문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5.19./2014.2.8)

**제45조(학위수여취소)** 학위를 받은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학위를 받은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5.19./ 2010.12.03./2011.12.1./2019.4.10)

### 제13장 명예박사학위

**제46조(자격)** 우리나라 문화와 학술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학위기 및 학위종별)**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별지<서식 5>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하되 그 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08.5.19./ 2011.12.1)

**제48조(학위수여취소)**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5.19./2011.12.1)

### 제14장 대학원 직제

**제49조(조직)**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0조(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각 학과에는 과정별 주임교수와 지도교수를 둔다. 학과 주임교수는 학칙 및 학과내규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제 지정, 기타 수학적지도를 담당한다.

### 제15장 대학원 위원회

**제51조(위원회 구성)** (개정 2007.11.5./ 2015.2.6.)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8.31.)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당연직위원과 총장이 위촉한 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6.4./2019.4.10./2021.08.31)

③ 대학원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08.31.)

**제52조(위원 임기)** 대학원위원회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위원회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54조(위원회 의결)** (개정 2017.10.28./전면 개정2019.4.10.)

- ① 위원장은 제5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대학원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55조(학칙개정안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학칙개정)**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7조(학칙공포)** (개정 2008.5.19)

개정된 학칙은 공포하여야 한다.

**제58조(준용조항)**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9조(시행세칙)** 본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196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서기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학칙은 서기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변경학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92년 5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는 학칙 제21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학칙 17조 ①, ②항은 1998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학칙 제 25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외로 허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학칙 제 25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외로 허용하며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학위취득을 못한 자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2003년 2월 28일까지 석·박사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전에 생물학과, 전산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학칙에 의해 2000학년도부터 생명과학과, 컴퓨터과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 4조 ①항 및 제 40조 별표 2는 2001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 4조 ①항 별표(1)의 문헌정보학과 계열변경은 2001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 40조 별표(2)의 문헌정보학과 학위종별은 2001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학칙 제 25조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외로 허용하며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학위취득을 못한 자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석·박사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4조 ①항은 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4조 ①항의 별표1 및 제42조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4조 ①항의 별표1 및 제42조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0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4조 ①항의 별표1 및 제42조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06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대학원에설치하는과정,계열,학과및입학정원의 변경사항은 200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의 변경사항은 201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의 변경사항은 201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10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의 변경사항은 2013학년도 전기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 제2항, 제21조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2013학년도 2학기에 박사과정 4학기를 이수한 자와 2014학년도 1학기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박사과정 5, 6학기생 중 수료학점 취득을 완료한 학생에 대해서는 변경 전 학칙에 따라 2014학년도에 한해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수료학점 취득을 완료하고 휴학 중인 박사과정 5, 6학기생이 일단 복학한 경우에는 수료처리 된다.

④ 수료학점은 모두 취득하였으나 추가 과목 이수를 원하는 박사과정 5, 6학기 학생은 2014학년도에 한해 추가 과목 이수를 허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13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별표1>, <별표2>, <별표4>의 변경사항은 201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5.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7조 제3호는 2015학년도 전기 입학생(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신·편입생 모두)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5.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6.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37조제4호는 2015학년도 전기 입학생(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신·편입생 모두)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5. 9. 18>**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2016학년도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별표3>, <별표4>의 변경 사항은 201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6.10.1.> (개정 2019.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별표1> 2017학년도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의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1조 제2항의 육아로 인한 휴학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1> 2018학년도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2>, <별표4>의 변경 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7.6.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7.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별표2>,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0.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1조, 제43조의 변경 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4.10.)

② <별표1>, <별표3>의 변경 사항은 2018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4.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학칙 <별표1>, <별표2>의 변경 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8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학칙 <별표1>, <별표2>의 변경 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2.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학칙 <별표1>, <별표2>,<별표4>의 변경 사항은 2019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학칙 <별표1>, <별표2>, <별표4>의 변경 사항은 2020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 4조 3항은 2019학년도 신설학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2.0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이 학칙 <별표2>의 문화예술교육학 학위명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외 <별표1>, <별표2>의 개정 사항은 2020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2020학년도 전기까지 문화관광학과 또는 외식경영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문화관광외식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0년 9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21.02.0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학칙 <별표1>, <별표2>의 변경 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2021학년도 전기까지 입학한 학생이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1년 9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21.08.31.>**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는 이 학칙에 의하여 입학 취소된 자로 본다.

**부 칙 <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2014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박사학위과정 입학생의 등록은 최초 4학기를 정규등록으로 하고, 정규학기 내에 수료학점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① <별표1>, <별표2>의 개정 사항은 2022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2022학년도 전기까지 음악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작곡전공, 이론전공 학생은 2022년 9월 1일자로 작곡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2022.4.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2.0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 <별표 2>의 박사과정 성악학과 변경 사항은 2024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2023학년도 후기까지 음악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성악전공 학생이 성악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4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계열, 학과 및 입학정원(개정 2005.8/ 2006.11/ 2007.4.30/ 2007.10.29/ 2008.4.7/ 2008.5.19/ 2008.8.11/ 2009.6.22/ 2009.10.5/ 2010.10.4./ 2011.4.6./ 2012.5.19./ 2013.2.13./ 2013.2.26./ 2013.6.18./ 2013.8.17./2014.10.8./2015.4.10./ 2015. 9.18./2016.10.1./2017.1.26./2017.7.25./2018.2.14./2018.4.19./2018.8.4./ 2019.2.15./2019.09.28./2020.02.01./2021.02.03./2021.03.24./2021.10.26./2023.02.08.)

① 석사과정

과정	계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이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이후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일반과정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정보학과		문화정보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화관광외사학과 (신설 2020.02.01.)		문화관광외사학과		문화관광외사학과		문화관광외사학과		문화관광외사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가족학과		가족학과		가족학과		가족학과		가족학과	
		이동복지학과		이동복지학과		이동복지학과		이동복지학과		이동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사회심리학과		사회심리학과		사회심리학과		사회심리학과		사회심리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학학과		화학학과		화학학과		화학학과		화학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수학과	394	수학과	394	수학과	394	수학과	394	수학과	394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이류학과		이류학과		이류학과		이류학과		이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인화학과		인화학과		인화학과		인화학과		인화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IT공학과		IT공학과		IT공학과		IT공학과		IT공학과	
		항공생명공학과		항공생명공학과		항공생명공학과		항공생명공학과		항공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응용물리학과 (계열 변경 2021.03.24.)		응용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피아노과		피아노과		피아노과		피아노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상악학과		상악학과		상악학과		상악학과		상악학과	
		작곡학과		작곡학과		작곡학과		작곡학과		작곡학과	
		사각·영상디자인학과		사각·영상디자인학과		사각·영상디자인학과		사각·영상디자인학과		사각·영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한민족사범대학 농촌진흥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미기기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미기기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미기기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미기기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미기기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미기기연구원	

과정	계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이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이후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정 학 과 가 협 동 과 정		인력개발정책학 빅데이터분석융합학 기후환경에너지학		인력개발정책학 빅데이터분석융합학 기후환경에너지학		인력개발정책학 빅데이터분석융합학 기후환경에너지학		인력개발정책학 빅데이터분석융합학 기후환경에너지학		인력개발정책학 빅데이터분석융합학 기후환경에너지학	

※ 각 학년도별 변동사항

- 2005학년도 : 2004학년도 대비 정원감축(469명→ 429명, 총 40명 감소)
- 2006학년도 : 2006학년도 대비 정원감축(429명→ 404명, 총 25명 감소)  
/ 교육공학과를 폐지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교육심리학과로 통합
- 2007학년도 : 2006학년도 대비 정원감축(404명→ 394명, 총 10명 감소) / 공예과와 회화과를 조형예술학과로 통합. 신설 미술사학과 계열 변경(예체능계열 → 인문사회계열)
- 2008학년도 : 여성학협동과정 폐지(입학정원 15명 → 박사과정 정원 10명 증원)/ 무역학과 폐지(2008.5.19 적용)
- 2009학년도 : 사학과와 한국사학과를 통 . 폐합하여 역사문화학과 신설, 불어불문학과를 프랑스 언어 . 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교육학과와 교육심리학과를 통합하고 교육심리학과 폐지
- 2010학년도 : 학.연.산 협동과정 신설(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독어독문학과를 독일언어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 2011학년도 : 외식경영학과 신설(2학기 신설)
- 2012학년도 : 정보방송학과를 미디어학과로 학과명 변경
- 2013학년도 : 생명시스템학과 신설
- 2013학년도 : 생명과학과 폐지(2학기 폐지)
- 2015학년도 : 인력개발정책학 신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설(2학기)
- 2016학년도 : 가정관리학과를 가족학과로 학과명 변경, 사회심리학과·IT공학과·화공생명공학과 신설
- 2017학년도 : 컴퓨터학과 계열변경(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 2018학년도 : 기악학과 폐지,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신설, 학.연.산 협동과정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설(2학기)
- 2019학년도 : 글로벌서비스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신설, 학과간 협동과정 빅데이터분석융합학, 학과간 협동과정 기후환경에너지학 신설(2학기)
- 2020학년도 : 문화관광학과, 외식경영학과 폐지, 문화관광외식학과 신설(2학기)
- 2021학년도 : 물리학과를 응용물리학과로 학과명 및 계열을 변경(2학기)



② 박사과정

과정	계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이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이후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일반과정	일반사회계	국어국문학과	138	국어국문학과	138	국어국문학과	138	국어국문학과	138	국어국문학과	138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일언어 문화학과		독일언어 문화학과		독일언어 문화학과		독일언어 문화학과		독일언어 문화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문화관광외사학과 (신설 2020.02.01.)		문화관광외사학과		문화관광외사학과		문화관광외사학과		문화관광외사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가족학과		가족학과		가족학과		가족학과		가족학과	
		이동복지학과		이동복지학과		이동복지학과		이동복지학과		이동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미디어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홍보광고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자연과학계		물리학과		138		물리학과		138	
	화학학과		화학학과	화학학과	화학학과		화학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생명시스템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IT공학과		IT공학과	IT공학과	IT공학과		IT공학과				
	IT학계	항공생명공학과	138	항공생명공학과	138	항공생명공학과	138	항공생명공학과	138	항공생명공학과	138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응용물리학과 (계열변경 2021.03.24.)		응용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음악학과	
		상위학과		상위학과		상위학과		상위학과		상위학과	
	예체능계	디자인학과	138	디자인학과	138	디자인학과	138	디자인학과	138	디자인학과	138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무용학과	
		작곡학과 (신설2021.10.26.)		작곡학과		작곡학과		작곡학과		작곡학과	
	전통문화계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138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138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138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138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138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인력개발정책화 동아시아지역학 헬스산업학 기후환경에너지학 문화예술교육학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인력개발정책화 동아시아지역학 헬스산업학 기후환경에너지학 문화예술교육학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인력개발정책화 동아시아지역학 헬스산업학 기후환경에너지학 문화예술교육학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인력개발정책화 동아시아지역학 헬스산업학 기후환경에너지학 문화예술교육학		한글서체개발연구센터 인력개발정책화 동아시아지역학 헬스산업학 기후환경에너지학 문화예술교육학	

과정	계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이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이후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학과명	정원
과정											

※ 각 학년도별 변동사항

1. 2005학년도 : 2004학년도 대비 증원(88명→128명, 총 40명 증가) / 통계학과 신설
2. 2006학년도 : 문헌정보학과 신설
3. 2007학년도 : 정보방송학과, 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멀티미디어학과와 신설  
/ 미술사학과 계열 변경(예체능계열 → 인문사회계열)
4. 2008학년도 : 2007학년도 대비 증원(128명→138명, 총 10명 증가)/ 무용학과 신설/ 무역학과 폐지(2008.5.19 적용)
5. 2009학년도 : 사학과를 역사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불어불문학과를 프랑스 언어·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6. 2010학년도 : 학·연·산·협·동·과·정 신설(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독어독문학과를 독일언어·문화학과로 학과명 변경.
7. 2011학년도 : 학·연·산·협·동·과·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
8. 2012학년도 : 학과간협동과정 인력개발정책학 신설
9. 2012학년도 : 정보방송학과를 미디어학과로 학과명 변경, 문화관광학과 신설(2학기)
10. 2013학년도 : 홍보광고학과 신설
11. 2013학년도 : 생명시스템학과 신설
12. 2013학년도 : 생명과학과 폐지(2학기 폐지)
13. 2015학년도 : 학·연·산·협·동·과·정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설(2학기)
14. 2016학년도 : 가정관리학과를 가족학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학과명 변경, IT공학과·화공생명공학과 신설
15. 2017학년도 : 컴퓨터학과 계열변경(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16. 2018학년도 : 학과간 협동과정 동아시아지역학, 헬스산업학 신설, 학·연·산·협·동·과·정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설(2학기)
17. 2019학년도 :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신설, 학과간 협동과정 기후환경에너지학 신설(2학기)
18. 2020학년도 : 학과간협동과정 문화예술교육학신설(1학기), 문화관광학과 폐지, 문화관광외식학과 신설(2학기)
19. 2021학년도 : 물리학과를 응용물리학과로 학과명 및 계열을 변경(2학기)
20. 2022학년도 : 작곡학과 신설(2학기)
21. 2024학년도 : 성악학과 신설(1학기)

<별표 2> 학위종별(개정2009.10.5./2012.5.19./2013.8.17./2013.10.26./2014.8.20./2014.10.8./2015.9.18./2016.10.1./2017.1.26./2017.7.25./2018.4.19./2018.8.4./2019.2.15./2020.02.01./2021.03.24./2021.10.26./2023.02.08.)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위명	학과명	학위명	학과명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역사문화학과(개정2009.11), 프랑스언어문화학과(개정 2009.11), 중어중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개정 2009.10), 일본학과, 미술사학과(개정 2006.11),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국어국문학과, 역사문화학과 (개정2009.11),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개정 2009.11), 중어중문학과, 독일언어문화학과 (개정 2009.10), 아동복지학과, 미술사학과 (개정 2006.11), 영어영문학과
문헌정보학석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문헌정보학과
(삭제 2020.02.01.)	(삭제 2020.02.01.)	(삭제 2020.02.01.)	(신설 2014.8.20./삭제 2020.02.01.)
(삭제 2020.02.01.)	(신설 2013.10.26./삭제 2020.02.01.)		
문화관광외식학석사	문화관광외식학과	문화관광외식학박사	문화관광외식학과
(신설 2020.02.01.)	(신설 2020.02.01.)	(신설 2020.02.01.)	(신설 2020.02.01.)
		철학박사	문화예술교육학
		(신설 2020.02.01.)	(신설 2020.02.01.)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개정 2005.8/2009.11)	교육학박사	교육학과
가정학석사	가족학과(개정 2015.9.18.)	가정학박사	가족학과(개정 2015.9.18.)
아동복지학석사	아동복지학과(개정 2007.11)		
정치학석사	정치외교학과	정치학박사	정치외교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언론학석사	미디어학과(개정2014.8.20)	언론학박사	미디어학과 (신설 2006.11/개정2014.8.20)
홍보광고학석사	홍보광고학과(개정2014.8.20)	홍보광고학박사	홍보광고학과 (개정 2014.8.20)
법학석사	법학과	법학박사	법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개정 2007.11)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상학석사	삭제 (폐지 2008.5.19)		삭제 (폐지 2008.5.19)
국제학석사	글로벌서비스학과 (신설 2018.4.19.)		
이학석사	화학과, 생명시스템학과 (개정 2013.8.17), 수학과, 통계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화학과, 생명시스템학과 (개정 2013.8.17), 수학과, 통계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석사	약학과, 제약학과	약학박사	약학과, 제약학과
심리학석사	사회심리학과 (신설 2015.9.18. )		
공학석사	IT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신설 2015.9.18.), 컴퓨터학과(개정 2016.10.1.) 전자공학과 (신설 2017.7.25.) 기계시스템학과 (신설 2017.7.25.)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신설 2018.4.19.) 응용물리학과(신설 2021.03.24)	공학박사	IT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신설 2015.9.18.), 컴퓨터학과(개정 2016.10.1.) 헬스산업학 (신설 2017.7.25.) 전자공학과 (신설 2018.8.4.) 기계시스템학과 (신설 2018.8.4.) 응용물리학과(신설 2021.03.24)
음악학석사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학과, 작곡학과	연주학박사	음악학과(피아노전공, 관악전공, 현악 전공), 작곡학과(작곡전공, 지휘전공), 성악학과(성악전공) (개정 2012.5.19./2021.10.26./2023.02.08.)
		철학박사	음악학과(음악치료학전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위명	학과명	학위명	학과명
			작곡학과(이론전공) (개정 2012.5.19./2021.10.26)
미술학석사	산업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신설 2006.11)	디자인학박사	디자인학과 (신설 2006.11)
시각·영상디자인석사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신설 2017.7.25.)	미술학박사	조형예술학과 (신설 2006.11)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체육학박사	체육학과
무용학석사	무용학과	무용학박사	무용학과 (신설 2008.4.7)
정책학석사	인력개발정책학 (신설 2014.10.8.)	정책학박사	인력개발정책학 (신설 2014.8.20.)
		지역학박사	동아시아지역학 (신설 2017.1.26.)
빅데이터분석융합학석사	빅데이터분석융합학 (신설 2019.2.15.)		
기후환경에너지학석사	기후환경에너지학 (신설 2019.2.15.)	기후환경에너지학박사	기후환경에너지학 (신설 2019.2.15.)

<별표 3> 학·연·산 협동과정 참여 학과 (신설 2010.10.4./ 개정 2013.6.18./ 2015.4.10./ 2015.9.18. / 2018.2.14.)

기관명	참여학과
농촌진흥청	생명시스템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명시스템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의 전체학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행정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시스템학과

<별표 4> 학과간 협동과정 참여 학과 (신설 2011.8.29./개정 2014.10.8./2015.9.18./2017.1.26./ 2017.7.25./2017.10.28./2019.2.15./2019.09.28)

협동과정	참여학과
인력개발정책학	행정학과 글로벌서비스학부 사회심리학과 인적자원개발대학원
동아시아지역학	국어국문학과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글로벌서비스학부 TESOL-국제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헬스산업학	화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원격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빅데이터분석융합학	통계학과 소프트웨어학부 IT공학과 빅데이터분석학연계전공 홍보광고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기후환경에너지학	기후환경융합학과 행정학과 화학과 화공생명공학부
문화예술교육학	예술교육학과(아동예술교육전공) 문화행정학과(예술경영전공) 미술교육전공 임상음악치료학과 행정학과 회화과

(서식 1) 수료증서

제 호

# 수료증서

○ ○ ○

19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대학원( 석·박 )사학위 과정 학과에서

소정의 이수를 필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 ○ ○ (인)

석·박)사 제 호

( 서식 2 ) 증명서

제 호

## 증명서

○ ○ ○  
19 년 월 일생

본 대학교 대학원 ( 석 · 박 ) 사학위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 서식 3 ) 학위기(석사)

석제 호

##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전공 :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  
○학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 원 장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 ○ ○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숙명여대 ○ ○ 석 ○ ○ ○



( 서식 4 ) 학위기(박사)

박제 호

##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논 문 :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 원 장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 ○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숙명여대 ○ ○ 박 ○ ○ ○

( 서식 5 ) 학위기(명예박사)

명박제

호

## 학 위 기

○ ○ ○  
19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큰 공헌을  
하였(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 ○ ○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 ○ ○ (인)

학위등록번호: 명박 ○ ○ (나) 제 ○ ○ 호

No.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 ○ ○

in ○ ○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Given in Seoul, Korea  
on the ○○○ day of ○○○,  
in the Year of two thousand and ○○○.

\_\_\_\_\_  
○ ○ ○, Ph.D.

Dean of the Graduate School

\_\_\_\_\_  
○ ○ ○, Ph.D.

President of the University